

#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코로나19 및 견본주택 운영 관련 유의사항]

- 「청주 동남 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아파트는 '21.03 분양 완료 이후 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며, 사이버 견본주택(<http://hobansummit-cjdn.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을 제외한 모든 업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정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청약 시 유의 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각 호실별로 최초 계약자가 선택한 유상/무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기준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승계 거부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사용 승인 전으로 해당 세대 관람이 불가하며, 계약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자 사전방문기간에 관람 가능합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계약이후 계약자에 한해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2023.07월 입주 예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 단 향후 관련 법령 변경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3.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입니다.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등을 위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2.16.이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26.입니다.(이하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거주지역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은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금회 재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생애최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 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주택 공급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2.16.)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당첨시 1회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특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전매행위 제한 등 관련사항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공급공고 승인을 받는 취소후 재공급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점이 아닌, 재공급 승인시점 현재 기준의 법령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함)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02월 21일(화)	02월 22일(수)	2월 27일(월)	3월 2일(목)	3월 7일(화)~ 3월 8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별도안내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므로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 등 사전에 준비하시어 청약신청 당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청구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통”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2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5292호(2023.2.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동남택지개발지구 B-8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4개동 총 1,215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특별공급 생애최초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930005	01	084.9481	84	84.9481	26.3070	111.2551	51.8507	163.1058	55.4124	2	0	0	0	0	1	1	1	0
	합 계											2	0	0	0	0	1	1	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분양대금	계약시	2023-04-10	입주 시	2023-04-10	입주 시	2023-04-10
084.9481	106	1602	78,561,000	234,139,000	312,700,000	31,270,000	31,270,000	2023-04-10	31,270,000	2023-04-10	250,160,000
	107	1404	78,561,000	234,139,000	312,700,000	31,270,000	31,270,000	2023-04-10	31,270,000	2023-04-10	250,16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당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2.26.)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으며, 일정 공정 후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확장시 제공 품목 현황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0	입주시	2023-04-10	입주시	2023-04-10	
084.9481	106	1602	4,221,000	422,100	422,100	3,376,800	3,376,800	3,376,800	3,376,800	가변형 벽체 확장(거실+침실2)
	107	1404	4,221,000	422,100	422,100	3,376,800	3,376,800	3,376,800	3,376,800	김치냉장고장 하부오픈형(시스템선반 미시공)

## ■ 추가선택품목 금액 및 품목 현황

(단위 : 원)

주택형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4-10	입주시	
084.9481	106	1602	16,510,000	1,651,000	1,651,000	13,20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li> <li>- 현관창고</li> <li>- 주방수납장(장식장+키큰장+내부서랍)</li> <li>- 침실1 화장대(입식)</li> <li>- 바닥플리싱타일(거실+'ㄷ'자형주방+복도+침실2)</li> <li>- 오븐(일반형, LG전자)</li> <li>- 비데일체형향변기(공용욕실)</li> <li>- 비데일체형양변기(부부욕실)</li> <li>- 공기청정전열교환기(해파필터)</li> </ul>
	107	1404	20,560,000	2,056,000	2,056,000	16,44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에어컨(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li> <li>- 현관창고</li> <li>-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도어)</li> <li>- 대형팬트리('ㄷ'자형주방+슬라이딩도어+선반)</li> <li>- 주방수납장(장식장+키큰장+내부서랍)</li> <li>- 침실1 드레스룸(3연동 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li> <li>- 침실1 화장대(좌식)</li> <li>- 3구인덕션(LG전자)</li> <li>- BI김치냉장고+키큰장(LG전자)</li> </ul>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최초 공급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청약자는 위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별 세부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아파트,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KB국민은행	086801-01-009081	(주)호반건설

- 당사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0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010101010101'으로 기재)

II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b>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b>)</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b>1인만 신청가능</b>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b>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li> <li>[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정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01.01. ~ 03.31.	전전년도 소득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일반공급	160% 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장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도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자(외국인은 청약 신청 불가)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02.16.)”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 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생애최초	2023.2.21(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일반공급		2023.2.22(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취소후재공급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유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li>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li>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ul>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3.2.27.(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3.7.(화)~2023.3.8.(수)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li> </ul> </li> </ul>
일반공급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2.27 (월) ~ 2023.3.8. (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2.27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	계약장소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록대조일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최초	<input type="radio"/>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분의 혼인신고일자 확인을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자녀	공고일 현재 미혼인 자녀의 혼인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input type="radio"/>	공통서류 및 해당 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에게 위임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input type="radio"/>	위임장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 비치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표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구분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발급처
	필수			
특별공급 (생애최초)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당첨자 본인 계약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li> <li>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li> </ul>
	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li> </ul>
	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li> </ul>
	O	○	추가 개별통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li> </ul>
	O		계약금 입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구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li> </ul>
	O		인지세 납부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e-revenuestamp.or.kr">e-revenuestamp.or.kr</a>),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li> </ul>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장소 비치)</li> </ul>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O		인감도장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ul>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li> </ul> <p>*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p>

- \* 상기 구비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3.02.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1억초과 10억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납부 및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추후 등기시 소인처리 하여야 합니다. 본 분양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사전방문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월 : 2023년 07월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 가능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 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 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li><li>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li><li>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li><li>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li>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li><li>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li><li>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li><li>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li>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li>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li>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li><li>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li><li>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li><li>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ul>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li><li>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li>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li><li>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li></ul>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학교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은 “운동초”에 배치 예정이며, 당해지구 1학교군(8교) 통학구역으로, 청주동중, 일신여중, 청운중, 용암중, 원봉중, 금천중, 운동중, 용성중학교 배치가 가능함.</li> <li>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본 사업지 인근 및 동남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며,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li> <li>본 아파트 주변에 교육시설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ul>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 관련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터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li> <li>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행,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행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li> <li>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등은 당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li> <li>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li> <li>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측벽 및 옥상, 옥탑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와 단지계획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li> <li>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li> <li>주동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li> <li>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 1층 각 출입구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주동 저층부 마감은 (필로티, 하부 부대복리시설 포함) 석재(필로티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주동 색재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li> <li>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li> <li>임면 물당설치에 따른 임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외부의 색재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ul>

- 공동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102동, 103동 후면 및 101동 전면과 109동 후면에 단지출입구가 위치하여 해당동 저층부 세대는 조망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를 반영하여(근린생활시설 출입구, 공동주택 출입구 공용) 단지 북측 1개소 및 동측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비상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의 이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101, 102동, 103동, 104동 전면, 108, 109동 후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03, 104동 배면에는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근생주차장이 위치하며, 102동 1층에 어린이집, 108동 1층에 경로당 및 MDF실이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7동 인근 지하에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이용에 따른 간섭,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106동 전면에 전기실/발전기실/기계실 DA가 설치될 예정임.
- 106동 지하층 인근에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평프실 설치로 진동,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1) 주차는 북측 근린생활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5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북측 주출입구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 함.
- 근린생활시설(2) 주차는 동측 근린생활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4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동측 주출입구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104, 105, 106, 107동의 경우에만 지하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동들은 지하1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음.
- 단지내 103, 104동 전면에 설치된 주차장 출입램프는 지하1~2층까지 이동 가능하며, 101, 102동 전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지하1층으로 바로 출입가능 함. 103, 104동 전면에 설치된 주차장 출입램프를 통해서 지하2층으로 이동 가능함.
- 지하 주차램프 출입부분 및 주차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 2.3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음.
- 107동 인근 지하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도서관, 독서실 등)은 지상에서 엘리베이터, 외부계단,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함.
- 105동 데크하부에 지하1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이 설치되며, 지상으로 드러난 전면부 및 후면부 지하1층 주차장을 통한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고, 스크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타격음, 음악 등에 따른 진동·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 됨.
- 필로티 상부 2층 세대 및 101동 101호, 102동 101호, 102호, 103호, 108동 101호, 102호 세대의 상부 2층 세대의 경우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함.
- 지상1층 세대, 필로티 상부 2층 세대 및 101동 101호, 102동 101호, 102호, 103호, 108동 101호, 102호 세대 외의 하향식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옥외운동시설, 주민휴게공간,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동은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주민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105동 전면, 106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1 설치 / 102동 전면, 108동 후면에 유아놀이터 설치 / 108, 109동 전면, 114동 후면 어린이놀이터-2 설치 / 107동 전면, 110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 -2 설치 / 111동 전면, 112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1 설치
  - 104동 전면에 주차장 램프 설치 / 104동 전면, 107동 후면 선큰 및 외부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실 2개소 설치 / 101, 102동 전면, 108, 109동 후면 주차장 램프 설치 / 108, 109동 정면 생태연못정원 설치 / 107동 인근 지하주차장 계단실 설치 / 106동, 107동 전면, 111, 110동 후면 커뮤니티 광장 설치 / 110동 전면, 113동 후면 아웃도어 광장 설치 / 109동 측면 지하주차장 계단실 설치
  - 101동 정면, 109동 후면 부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2) 설치 / 104동 후면 근린생활시설(1) 설치 / 101동 전면 경비실 설치
- 지상에 지하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및 제연용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특정동의 지붕층에 TV공정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기준)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107동, 108동, 111동, 114동 지붕층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 109동 인근 지하주차장 훈룸 및 전기실인근 훈룸에 중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104, 105, 106, 107, 110, 111, 112, 113, 114동 지붕층 일부구간에 태양광 설비가 적용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 및 설치면적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 D/A, 주차장 썬콘)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지 배지상 각 동의 배면(또는 인접한 위치)에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 수거시설이 설치되며 쓰레기 분리 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li> <li>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위치, 규격, 수종,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 보행자도로 및 연결녹지, 인접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li> <li>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다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li> <li>당해 택지개발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li> <li>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li> <li>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li> <li>동 하부 지하층에 제연힌트룸이 계획되어 있고, 1층 필로티 하부 및 주동에 인접하여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호 하부에 DA 구조물 돌출 등에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li> <li>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li> <li>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li> <li>'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자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li> <li>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중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li> <li>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및 계단실은 여름철에 대기환경(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li> <li>단지 외 서측 방음벽이 설치되었으나 참고하기 바람.(GL+11.5M) : 길이 300M</li> </ul>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li> <li>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흉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li> <li>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li> <li>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li> <li>실외기설치는 동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li> <li>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음.</li> <li>본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옥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옥실장 및 옥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옥조 포함).</li> </ul>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됨.
- 불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 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세대내 무선AP는 거실 1개소에만 설치되며 세대 구조 및 거리에 따라 무선 성능 저하 및 무선 접속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유니트 및 급배기덕트가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며, 장비가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자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서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고,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배수 이중관은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등으로 예방 해야함(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발생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사양(유리, 창틀)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자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출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출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84타입 계약세대가 다목적실을 주방 대형팬트리 유상옵션을 선택 할 경우 바닥면적 일부가 Dead Space로 시공 됨.
- 전동 1층 필로티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할 예정이며 설치 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VII

## 기타사항

### ■ 사업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 여건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북측 : 폭20M, 서측 : 폭 33M, 동측 : 폭 15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된 하천 등은 공동주택 입주시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천 정비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인접대지, 학교, 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의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기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측에 월운천이 위치하며 하천으로 인해 유출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측에 상가 및 주차장 등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9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환경 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分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주)이림기술단	(주)금라기술단
감리금액	2,853,235,000	730,040,443	212,135,000	127,6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分	금 액	구 分	금 액	구 分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80,262,261,200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52,311,984,000
	기간이자	954,371,272		용접공사	-
	필요적경비	4,188,292,858		조적공사	1,851,330,000
	그 밖의 비용	6,363,739,670		미장공사	3,407,840,000
	계	91,768,665,000		단열공사	1,032,473,000
토목	토공사	4,315,706,000		방수·방습공사	1,441,901,000
	흙막이공사	-		목공사	3,097,419,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8,654,211,000
	옹벽공사	676,448,000		금속공사	3,293,232,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
	우수·오수공사	979,069,000		창호공사	5,696,401,000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1,530,908,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3,026,213,000
	도로포장공사	1,032,473,000		돌공사	3,595,853,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1,869,132,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441,901,000
	조경공사	4,610,525,000		수장공사	3,667,058,000
	부대시설공사	53,404,000		주방용구공사	1,459,703,000
	공통가설공사	5,019,954,000		그 밖의 건축공사	5,002,152,000
건축	가시설물공사	996,870,000		급수설비공사	1,548,709,000
	지정 및 기초공사	-		급탕설비공사	1,548,709,000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100,548,000
공사비	기계설비	기계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263,889,000	
			난방설비공사	3,346,636,000	
			가스설비공사	694,249,000	
			자동제어설비공사	284,822,000	
			특수설비공사	-	
		그밖의공종	공조설비공사	-	
			전기설비공사	13,050,928,000	
			정보통신공사	5,485,734,000	
			소방설비공사	9,897,216,000	
			승강기공사	3,061,815,000	
	간접비	그밖의공사비	일반관리비	9,438,803,000	
			이윤	16,989,846,000	
			계	188,776,064,000	
		설계비	설계비	2,080,849,000	
			감리비	3,923,010,443	
			일반분양시설경비	20,842,746,000	
	합계	분당금 및 부담비	-	-	
			보상비	-	
		그 밖의 비용	기타사업비성 경비	55,607,485,557	
			계	82,454,091,000	
			합계	362,998,820,000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B8블록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1-101-0000900 호	삼천육십칠억일천백구만원정 ( ₩ 306,711,090,000 )	입주자모집 신고수리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주)호반건설	204711-0007384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2.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hobansummit-cjdn.co.kr/>

■ 분양문의 : 1566-9172